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3. 23(목) 10:00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0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3. 10.
- 라. 회부일자 : 2023. 3. 1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18,317,049천원(일반 695,027,520천원 특별 23,289,52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1회추경 (안)	비 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계		718,317,049	715,593,915	710,356,657	5,237,258	2,723,134	
일반회계		695,027,520	692,304,386	687,067,128	5,237,258	2,723,134	
특별회계		23,289,529	23,289,529	23,289,529	0	0	
	의료급여기금	590,000	590,000	590,000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591,400	591,400	591,400			
	주차장	22,108,129	22,108,129	22,108,129			

4. 문화환경국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안)	증감율 (%)
문 화 환 경 국	68,011,097	62,940,707	5,070,390	8.06 %
문 화 체 육 과	25,902,900	20,930,870	4,972,030	23.75 %
청 소 행 정 과	39,755,963	39,755,963	0	0.00 %
환 경 과	2,009,936	1,913,576	96,360	5.04 %
부 동 산 정 보 과	342,298	340,298	2,000	0.59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1회 추경(안) ②
문화체육과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 금천뮤지컬센터 연습실 개선공사 및 홈페이지 구축	550,192	320,192	230,000
열린 문화예술존 활성화	- KBS전국노래자랑 공연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85,500	50,500	35,000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지원	- 종무관련 종교행사 조형물 설치	108,980	98,980	10,000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 금빛공원 조성 공사비	4,515,040	-	4,515,040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 서울시 공공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개정으로 인한 설계비 증가분	191,962	61,962	130,000

세 부 사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1회 추경(안) ②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운영 비용	162,900	97,200	65,700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구 비분	38,000	34,250	3,750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 체육회 운영 시비보조금 감액	594,571	612,031	△17,460
환경과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 관리	- 자동차 미세먼지 흡착필터 및 프레임 부착	445,326	348,966	96,360
부동산정보과				
중개업소 관리	-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상 담위원(마을변호사) 상담 비 용	10,050	8,050	2,000

5. 검토의견

○ 문화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629억 4,070만원)에서
금회 50억 7,039만원이 증액된 총 680억 1,109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9.47%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 문화체육과

기정예산(209억 3,087만원)에서 금회 49억 7,203만원 증액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2억 3,000만원 증액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45억 1,504만원 증액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 1억 3,000만원 증액

나. 환경과

기정예산(19억 1,357만원)에서 금회 9,636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 9,636만원 증액

다. 부동산정보과

기정예산(3억 4,029만원)에서 금회 20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상담비용 200만원 증액

- 문화환경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부서별 현안 사업의 재원 분배에 있어 예산 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